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7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이건태 · 추미애 · 진선미
박균택 · 정준호 · 문진석
전용기 · 이용우 · 전현희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5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

2. 국회의원

② 국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가 제5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제5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u>위원회에</u> 신고할 수 있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①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자에게----- -----.
<u><신 설></u>	1. <u>위원회</u>
<u><신 설></u>	2. <u>국회의원</u>
<u><신 설></u>	② <u>국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가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③ <u>국회의원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u>신고 사항</u> 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u>신고 사항</u> (제55조제2항에 따라 접수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⑨ (생 략)	<u>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